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

차 례

I.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1
1. 신청 개요	1
2. 유의 사항	2
II.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접수	3
1. 신청서류	3
2. 자격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작성	10
3. 유의 사항	10
III.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자격증 발급 신청	13
1. [1차] 온라인 신청	13
2. [2차] 서류 신청	14
IV. 자격증 교부	15
1.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15
V. 자주하는 질문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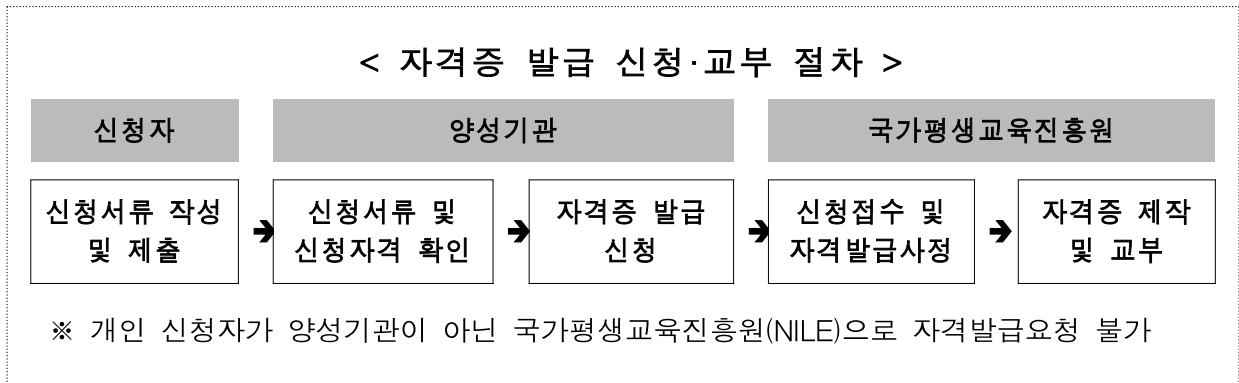
【 부 록 】

[부록 1]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20
[부록 2] 평생교육 관련과목	22
[부록 3] 평생교육사 경력 산정표	23
[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26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28

I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

1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이하 '양성기관')
- (신청 절차)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연수센터)에 자격발급 신청



- (신청·접수 시기) 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양성기관의 접수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양성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자격 발급 신청은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	양성기관⇒NILE	
제1차	1.21(월) ~ 1.31(목)	2.1(금) ~ 2.18(월)	3.15(금)
제2차	4.15(월) ~ 4.30(화)	5.2(목) ~ 5.10(금)	5.31(금)
제3차	7.15(월) ~ 7.31(수)	8.1(목) ~ 8.14(수)	9.16(월)
제4차	10.21(월) ~ 10.31(목)	11.1(금) ~ 11.8(금)	12.2(월)

2 유의 사항

-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 수행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대상)자이어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졸업사정에 의해 졸업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양성기관은 이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자격·연수센터)'에 공문 발송하여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졸업 유예 등 학위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자격교부일로부터 3일 이전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주요 변경사항

- (홈페이지 개편)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개편에 따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변경
 - 온라인 신청과정은 [부록 5]의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 서류)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사정위원회 운영('18. 12)에 따른 자격발급 사정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
 - 양성기관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생략가능하나, 성적증명서는 간소화 서류에서 제외

당초	변경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양성기관 사실 확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양성기관 사실 확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생략(성적증명서는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1 신청서류

- 양성기관은 **개인별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서류미비 여부 등을 확인**
-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개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
신청 자별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서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붙임 4]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서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서식 3] 양성기관 보관용
해당 자별 추가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서식 4]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자에 한함. 	[부록3]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부 	[부록 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 누락이 없는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확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각 1부)

신청서류	참고사항	참고서식	
공통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부록1]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작성	[서식 1]
	·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 성적증명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	· 신청자의 일부 과목이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	
	· 기본증명서(특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원본으로 제출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 양성기관 보관용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활용 가능	[서식 3]
해당자별 추가서류	유사한 명칭 교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서식 4]
	구법 대상자 (평생교육 관련 경력 소지자)	· (평생교육 관련업무) 경력증명서 · 구법 대상자로 평생교육 관련 경력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부록 3]
	외국학위 취득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부록 5]
	외국인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한번 더 확인]

- ①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인가?
- ② 기본증명서는 특정유형으로 제출하였는가?(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 유형으로 제출)
- ③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과목의 성적증명서가 구비되었는가?

※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해당 차시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기간 입학 ~ 졸업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	기관명	이수기간 ~		
신청 내용	자격등급	평생교육사 급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급 제 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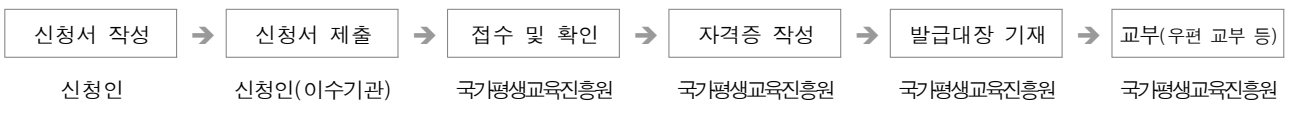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 과목				
		소 계		
선택 과목				
		소계		
합계				

경력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		
		~		
		~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학교명 :
- 과목 운영 학과(학부)명 :
-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구분	법정 교과목명	인정 유사교과목명	과목 개설일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필수과목				
선택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법정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0대학교 총장

(또는 학과(부서)장)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② 자격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 양성기관은 개인별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서식5.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명단](이하 ‘신청자 명단’) 작성
-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사실 확인’을 통해 자격발급 검정 실시

[참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안내

- 다음 대상자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생략가능

구분	대상자	미제출 서류	진위여부 확인기관
대학	졸업(예정)대학과 자격증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신청대학
학점은행 기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예정)자	학점은행제 학위(예정)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을 이수한 대상자의 경우, 자격발급 검정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음.

③ 유의 사항

- 신청서류 제출 후 별도의 서류 보완이 불가하므로, 자격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으로 자격 요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해당 차시 내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불가함.
-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은행제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차 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

서식 5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명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명단

신청기관명		담당부서(학과)	
-------	--	----------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급호		공통서류 검토					해당자별 추가 구비서류 검토		신청자격 확인				비고	
			등급	제호	자격발급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현장실습 평가서	유사과목 관련서류	외국학위 및 외국인 관련서류	적용 법령 ¹⁾	최종 학력	학점 총족여부 ²⁾	성적 평균		
1	홍길동	123456-1234567	2	2	○	사실확인	○	○	○	○	○	해당없음	개정법	학사	충족	90	
2	이순신	234567-2345678	3	1	○	○	○	○	○	○	○	해당없음	구법	전문학사	충족	87	
3	강감찬	345678-3456789	1	1	○	사실확인	○	○	○	실습면제	○	해당없음	구법	박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																	

우리 대학(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위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동의 받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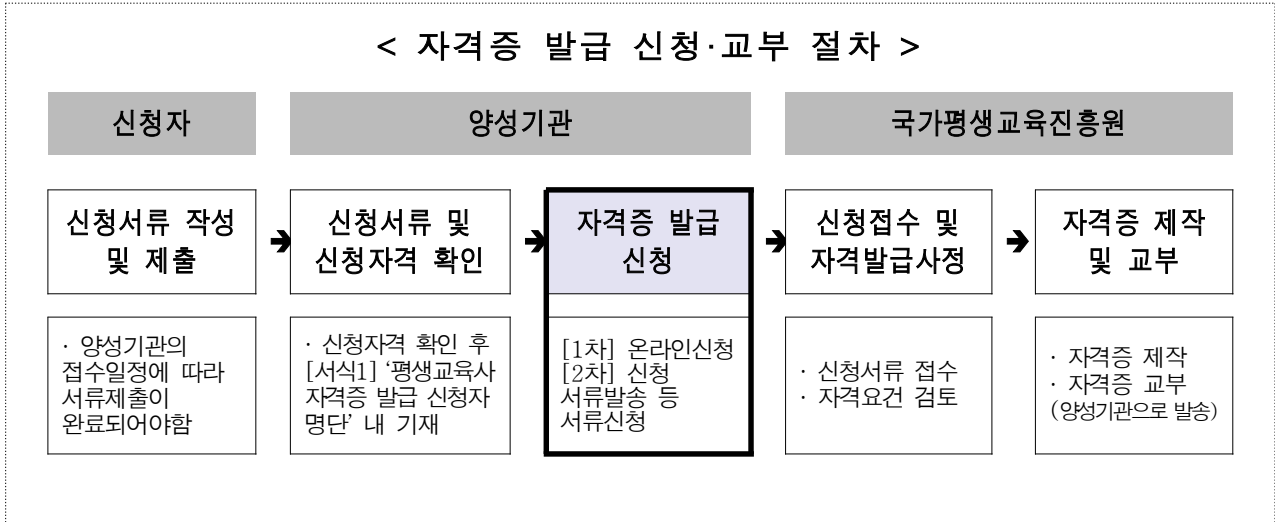
신청기관장 : (서명 또는 인)

1) 「평생교육법」 전부개정('07.12) 이전의 법령 적용자는 '구법'으로, 전부개정 이후의 법령 적용자는 '개정법'으로 기재함.

2) <개정법> 2급 1호 : 15학점 이상 / 2급 2호·3호 : 30학점 이상 / 3급 1호·2호 : 21학점 이상 취득 시 신청자격 충족

<구 법> 2급 1호 : 14학점 이상 / 2급 2호·3호 및 3급 1호·2호 : 20학점 이상 / 2급 4호·5호 : 30학점 이상 취득 시 신청자격 충족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을 신청 한 이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1 [1차]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홈페이지 기관회원 로그인 및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홈페이지의 자격증 신청(신규발급) 배너는 신청접수 기간에만 확인 가능
- 신청인원이 다수일 경우, 신청자별 신청내역을 엑셀로 사전 작성한 후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 일괄 업로드하는 「엑셀 업로드 기능」 활용 권장
- 신청자별 신청 후 온라인 상 '임시저장 내역'에 남아있는 대상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개편(2019년 1월 예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방법(엑셀 업로드 방법 포함) 및 기능설명은 추후 공고시 안내 예정임.

2 [2차] 서류 신청

- 신청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양성기관은 [서식 5.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공문(전자문서)로 자격증 발급 신청

전자문서 수신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 자격연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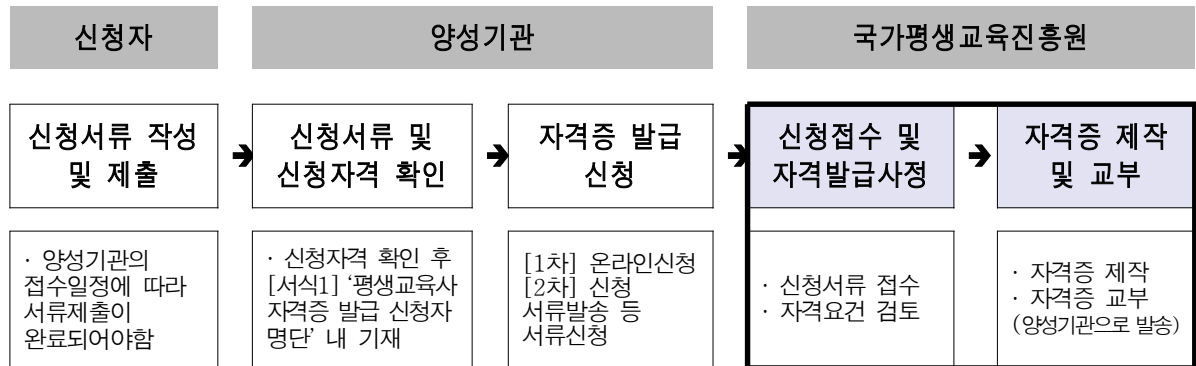
-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 공문(신청자 명단),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제출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층
자격·연수센터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 신청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제출처를 확인하여 서류 발송요망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양성기관으로 교부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 결과는 자격증 교부일에 자격관리 홈페이지 (ledu.nile.or.kr)를 통해 각 양성기관으로 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에 따른 교부불가 대상자의 신청서류 일체 양성기관으로 반송

1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Q1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자 개인신청이 가능한가요?

A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의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 학습자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및 학점은행기관)으로 자격증 신청 서류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2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자격증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A2 : 여러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인신청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양성기관 우선순위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Q3 :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3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은 **연 4회**이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 공고됩니다. 신청자가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신청하는 기간은 공고 내 [신청자⇒양성기관]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사전 제출하도록 합니다.

Q4 :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도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 학위 취득되어야 하며, 학위 취득 시기가 아닌 제2차, 제4차 접수기간에는 예정자의 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의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A5 :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학점인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능합니다.

Q6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을 해야 하나요?

A6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반드시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접수

Q1 :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의 학점인정 신청은 기간 내 완료하였으나, 학점인정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학점에 대한 성적증명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 학점인정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 제출은 생략가능하며, 본원에서 최종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 최종 학점인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Q2 : 자격증 신청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일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는 반드시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Q3 : 기본증명서(특정)은 왜 제출해야 하나요?

A3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 후견사항(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특정)을 제출해야 하며,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 가능함

Q4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환산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급의 백분율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 이수기관과 신청기관이 동일한 경우 등급별 점수구간 내 백분율 환산점수를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타 이수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별 점수구간의 최하점으로 성적을 환산하도록 합니다.

※ 예시 [A+: 100-97]의 경우 A+는 97점으로 환산

Q5 : 등급별 점수구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성적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 대학에서 **등급별 점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며, 등급별 점수 확인서를 기재출한 대학의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자료실 - 서식모음 - [서식]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참고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Q1 : 개인 신청자의 자격검정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결과는 자격증 교부일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ledu.nile.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각 양성기관으로 안내*되**므로 개인 신청자는 자격증을 신청한 양성기관으로 문의하도록 합니다.

※ 양성기관별 교부결과 확인방법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활용 매뉴얼 참조

Q2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격증이 교부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보내주나요?

A2 : 발급된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으로 교부(우편발송)** 되며, 각 양성기관에서는 자격증 검토 및 개별 신청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가 변경된 신청자의 경우, 자격증을 신청한 양성기관으로 연락하여 수령지 주소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Q3 : 교부불가자의 경우 교부불가 사유만 보완하여 신청하면 되나
요?

A3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에 따른 교부불가 대상자의 신청서류 일
체 양성기관으로 반송됩니다. 교부불가 사유를 보완하여 신규
자격증 발급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자격증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가. 개정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시행 2017.7.26]

등급	자격기준
1급	<p>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p>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구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시행 2000.3.13]

등 급	자 격 기 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가. 평생교육 관련과목(개정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8.2.18 전부개정]

구분	과목명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21)	실천영역(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나. 평생교육 관련과목(구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0.3.31 제정]

구분	종 류	
가. 필수 과목	과목 I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적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과목 II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나. 선택 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참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정, 2000.3.31)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1 가목(과목 I)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 중 과목 II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록 3

평생교육사 경력산정표

□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근무유형		경력산정식	
		<1군> 적용 시	<2군> 적용 시
통상근로자 / 전임 교장사 (1주 40시간 근로자)		총 경력기간 × 100%	총 경력기간 × 80%
단시간근로자 / 시간강사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총 경력기간 × $\frac{\text{주당근무(강의)시간}}{40\text{시간(통상근로시간)}} \times 100\%$	총 경력기간 × $\frac{\text{주당근무(강의)시간}}{40\text{시간(통상근로시간)}} \times 80\%$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수자 (대학/학점은행 기관)	평생교육 관련 전공 전임교수	총 경력기간 × 100%	
	타 전공 전임교수 / 시간강사	총 경력기간 × 주당 강의시간* × 10%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시간에 한함	

- 1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지정·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 기관
- 2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 경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에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평생교육 관련 업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경력산정시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접수 마감일자를 원칙으로 함.
- 동일 기간 내 중복된 경력(외부강의 등)은 유리한 경력을 택 1하고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단, '시간강사'의 경우 동일 기간 내 여러 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종사한 경우, 해당 기관이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간은 1군으로, 그 이외 기간은 2군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대학 강의경력 산정 시 정규학기는 3.5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
- 휴직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은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므로 실근무경력에 한하여 산정)

□ 경력산정 예시

사례	직군	근무유형	경력기간(예시)	경력산정	인정경력
1	1군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총 경력기간 : 36개월	36개월 × 100% = 36개월	36개월
2	2군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총 경력기간 : 24개월	24개월 × 80% = 19.2개월	19.2개월
3	1군	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 : 35시간 ○ 총 경력기간 : 12개월	12개월 × 35/40 × 100% = 10.5개월	10.5개월
4	1군	시간강사	A기관 ○ 주당 강의시간 : 10시간 ○ 총 경력기간 : 4개월	4개월 × 10/40 × 100% = 1개월	1.3개월
			B기관 ○ 주당 강의시간 : 4시간 ○ 총 경력기간 : 3개월	3개월 × 4/40 × 100% = 0.3개월	
5	1군	대학 시간강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	1학기 ○ 주당 강의시간 : 3시간	3.5개월 × 3 × 10% = 1.05개월	3.15개월
			2학기 ○ 주당 강의시간 : 6시간	3.5개월 × 6 × 10% = 2.1개월	

□ 평생교육기관 유형

직군	기관유형	관계법령	기관형태(예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예시)	
1군	1. 평생학습전담·지원기구	1-1.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0조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출 불요
		1-2.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등	평생학습관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1-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국가·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이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 교육청에 등록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서, 등록증 등	
	3. 성인문해교육기관	3-1. 문해교육센터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3-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교육법 제39조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설치·지정서, 공문 등 ※ 설치·지정기간에 한함
		3-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평생교육법 제39조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사업 선정공문 등 ※ 사업 선정기간에 한함
	4. 국가·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제15조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사업 전담부서 등	제출 불요	
	5.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법 제29조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지원사업 수행 대학,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사업 선정(운영) 공문 등 ※ 사업 선정(운영)기간에 한함	
	6. 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신고 기관	6-1. 초·중등·대학 부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청 설치 보고 공문 등 교육부 설치 보고 공문, 신고서 등
		6-2. 학교형태	평생교육법 제31조	공민학교, 각종학교 등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 지정서, 등록증
		6-3.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법 제32조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화진화장품 단과대학 등의 사내대학	교육부 인가증
		6-4.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교육부 인가증
		6-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법 제34조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6-6.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 운동)연합, YMCA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6-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6-8.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법 제38조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등	평생교육시설 최초신고증	

구분	기관유형	관계법령	기관형태(예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예시)	
2군	7.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법 제2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육지원청 등록증	
	8. 기관형 교육기관	8-1. 주민자치기관	지방자치법 등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각 개별법령에 따른 설립 근거자료(법조문, 등록·신고증 등) 및 평생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빙하는 자료(운영규정, 정관 등)
		8-2. 문화시설기관	도서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8-3.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법 등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8-4. 여성관련시설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문화)회관 등	
		8-5.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8-6.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법 등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8-7.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8-8.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등	종합사회복지관 등	
	9.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9-1.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9-2.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10.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여성·노인·시민단체, YMCA 등			
11. 기타	그 밖에 다른 법령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
 - 기본 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로 기본증명서의 유형 중 '특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방문 발급)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1통 당 수수료가 발생됨.
 - *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신청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

-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
-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①의 친견·후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을 선택·발급함.
-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의 서류는 발급 받지 않고, ②의 '상세' 유형으로 선택·발급함.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 현재위치정보 : 홈 > 열람 /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신청대상자																															
• 본인과 관계 *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발급 가능 대상자 확인"/>																													
• 성명 *	<input type="text"/>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등록기준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신청내용																															
	<input checked="" type="radio"/> 발급	<input type="radio"/> 열람 후 발급	<input type="radio"/> 열람																												
• 증명서 종류 *	<table border="0"> <tr> <td><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②)</td> <td><input type="radio"/> 상세)</td> </tr> <tr> <td>①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친권·후견)</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input checked="" type="radio"/> 특정)</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td> <td><input type="radio"/> 상세)</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혼인관계증명서</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td> <td><input type="radio"/> 상세)</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입양관계증명서</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td> <td><input type="radio"/> 상세)</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td> <td><input type="radio"/> 상세)</td> </tr> <tr> <td colspan="2">발급통수 합계</td> <td><input type="text"/> 0 통</td> <td></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②)	<input type="radio"/> 상세)	①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친권·후견)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특정)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혼인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발급통수 합계		<input type="text"/> 0 통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②)	<input type="radio"/> 상세)																												
① <input type="checkbox"/> 기본증명서(친권·후견)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특정)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혼인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input type="checkbox"/>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text"/> 0 통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input type="radio"/> 상세)																												
발급통수 합계		<input type="text"/> 0 통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미국	·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인장증명서가 아닌 학력인정에 대한 의견서는 인정불가	02-739-7400
필리핀	· 주한 필리핀대사관 * 레드리본(필리핀외무성 발급) 대체가능	02-796-7387
뉴질랜드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02-3701-7700
	*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학교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화면 캡처 및 출력하여 제출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02-2003-0100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02-3149-4300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02-3702-0601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02-794-1951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02-734-7948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